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족문화의 날(5월 두 번째 금요일)’ 공휴일 지정〉  
■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71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 2 |
| 2.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재섭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12.
3. 회부연월일 : 2025. 5. 1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하여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장시간 근로와 과소한 휴가일수를 적시하고 있으나 유급 공휴일 도입에 대하여는 관련 논의가 없음.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친화적 휴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 Ⅱ.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공휴일에 포함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 5. (생략)<br><u>&lt;신설&gt;</u><br><br>6. ~ 10. (생략) | 제2조(공휴일) -----<br>-----.<br>1. ~ 5. (현행과 같음)<br>6. <u>가족문화의 날(5월 두 번째 금요일)</u><br>7. ~ 11. (현행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

## 2. 검토의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족 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음.

현재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한 가정문화 형성을 위한 사회 전반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sup>1)</sup>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여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공휴일화함으로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가족 간 유대감 증진을 통해 건전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가족문화의 날’을 현행법상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sup>2)</sup> 등을 고려하여 공휴일 지정 여부를

---

1)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가족문화의 날’의 공휴일 지정은 가족친화적 휴일 제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공휴일 확대는 이해관계가 다양한 사안이므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주요 선진국 대비 적지 않은 우리나라 공휴일 수(15일)와 최근 대체공휴일(2021년 4일, 2023년 2일)을 확대해 온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는 ‘가족문화의 날’의 공휴일 지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우리나라 전체 공휴일 수가 적지 않고 최근 대체공휴일을 확대한 점,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
|--------------|
| 문 의 처        |
| 02)6788-5342 |

---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